

실업급여 지급제한 ·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, 전화 · 문자 등 연락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·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3. 10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 :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17. 3. 10. ~ 2017. 3. 23.(14일간)
5. 문 의 :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손성달(☎ 031-828-0955)
(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, 의정부고용센터 1층)